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회)	

상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시행('26.7.1.)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의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조)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제4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
- 3) 규제심사 등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 및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제46조에 따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 여 「상훈법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에 따른 <u>서울특별시장</u> (이하 “서훈 추천 권자“라 한다) 소속으로 공적심 사위원회(이하 “공적심사위원 회“라 한다)를 둔다. 1. · 2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	제2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장 및 「전남광주통 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</u> <u>제4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장</u>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00 - 4092